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 6. 11.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8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0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5. 검토의견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0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07,130,081,820	833,581,607,857	686,486,998,834	147,094,609,023
일반회계	789,989,933,280	816,702,159,230	675,105,780,094	141,596,379,136
특별회계	17,140,148,540	16,879,448,627	11,381,218,740	5,498,229,887

(단위 : 원)

회 계 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50,450,971,660 (400,000,000)	14,887,460,370	0	14,190,206,835	571,986,804	0	66,993,983,354
일반회계	50,450,971,660 (400,000,000)	14,058,212,050	0	13,861,751,775	588,786,804	0	62,636,656,847
특별회계	0	829,248,320	0	328,455,060	△16,800,000	0	4,357,326,507

- 총 세입 결산액은 8,335억 8,160만원으로 전년대비 29.61%(1,904억 1,613만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세입 평균 증가율은 17.97%임.
- 총 세출 결산액은 6,864억 8,699만원으로 전년대비 36.53%(1,836억 6,082만원)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세출 평균 증가율은 16.99%임.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세 입	411,908,369	474,527,092	546,935,393	643,165,476	833,581,608
	세 출	348,664,466	380,318,000	420,363,209	502,826,173	686,486,999
	결산상잉여금	63,243,903	91,209,091	126,572,185	140,339,303	147,094,609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 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66,993,983,354	32,338,584,000	34,655,399,354	
일반회계	62,636,656,847	25,010,703,000	37,625,953,847	
특별회계	4,357,326,507	7,327,881,000	△2,970,554,493	

- 순세계 잉여금은 669억 9,398만원으로 전년대비 15.71% (△124억 8,746만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4.25%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59,747,000	2,713,428,000	2,546,346,296	0	167,081,704
일반회계	4,759,747,000	2,713,428,000	2,546,346,296	0	167,081,704
특별회계	100,000,000	0	0	0	

○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5,974만원으로서 전년도 256억 1,541만원보다 207억 5,567만원 감소하였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외 17건으로 25억 4,634만원을 지출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1개 부서, 13개 기금		13,696	20,791	32,601	11,811	34,487
자 활 기 금	복지지원과	963	△28	102	130	935
노인복지기금	어르신 장애인과	349	4	7	2	353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397	5	10	5	402
청년미래기금	아동청년과	500	503	503	0	1,003
재정안정화 기금	기획예산과	0	17,101	17,101	0	17,101
재난관리기금	안전도시과	3,676	1,806	7,067	5,261	5,482
옥외광고발전 기금	건설행정과	1,053	190	303	113	1,242
도로굴착복구 기금	도로과	1,633	41	1,120	1,079	1,674
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역경제과	3,462	1,053	6,095	5,042	4,515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역경제과	0	59	90	31	5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청소행정과	476	28	56	28	504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청소행정과	255	18	28	10	273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931	12	120	108	943

-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1개 부서, 13종으로
전년도말 136억 9,62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6억 14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억 1,065만원이고
차입잔액은 344억 8,702만원임.

나. 기획재정국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서 p)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318,069,711,000	409,234,969,830	392,309,697,360	95.8%
기 획 예 산 과 (70p)	209,063,042,000	272,368,688,810	272,368,688,810	100.0%
홍보디지털과 (72p)	242,000,000	262,500,990	262,500,990	100.0%
재 무 과 (73p)	3,935,000,000	3,701,543,560	3,701,543,560	100.0%
세 무 1 과 (74p)	102,252,181,000	128,948,005,960	112,974,045,150	87.6%
세 무 2 과 (75p)	2,467,881,000	2,970,977,520	2,578,893,450	86.8%
부동산정보과 (76p)	109,607,000	983,252,990	424,025,400	43.1%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3,180억 6,971만 1천원
이며, 징수결정액은 4,092억 3,496만 9천원, 세입결산액은 3,923억
969만 7천원으로 징수율은 95.8%임.

2)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33,237,486,000	29,922,279,050	90,171,000	20,831,040	3,204,204,910	9.6%
기획 예산과 (136p)	26,546,920,000	23,821,116,070	61,305,000	717,000	2,663,781,930	10.0%
홍보 디지털과 (138p)	4,742,705,000	4,349,013,470	28,866,000	8,761,270	356,064,260	7.5%
재무과 (140p)	464,101,000	442,839,060			21,261,940	4.5%
세무1과 (141p)	532,388,000	450,490,460		11,352,770	70,544,770	13.2%
세무2과 (142p)	605,528,000	538,732,740			66,795,260	11%
부동산 정보과 (143p)	345,844,000	320,087,250			25,756,750	7.4%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출 예산현액은 332억 3,74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99억 2,227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천 17만 1천원, 보조금반납금은 2,083만 1천원, 집행잔액은 32억 420만 4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9.6%로, 2019회계연도의 63.5%보다 53.9% 감소하였음.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83,967	22,193	22,193	40,540	
기획 예산과	구정연구단 연구과제 수행	83,967	22,193	22,193	40,540	(연도내 지출불가) 차년도까지 이어지는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 기획재정국 명시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1건 4,054만원임

※ **결산서 900p, 심사 보조자료 73p 참고**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312,200	178,785	129,154	49,631	
소계		232,200	106,455	85,690	20,765	
기획 예산과	열린구정기획	102,200	90,455	77,690	12,765	(계획변경) 사업기간 변경으로 내년 2월 준공
	기관공통 운영비지원	130,000	16,000	8,000	8,000	이전부지협의를 및 국방부 의 이전협의 요청서 회 신 지연
소계		80,000	72,330	43,464	28,866	
홍보 디지털과	정보취약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주민참여)	80,000	72,330	43,464	28,866	독산로 지중화 구간(법원 단지) 보도공사 일정('21.5 월)에 맞춰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준공기한 연기

- 기획재정국 사고이월사업은 기획예산과 2건 2,076만원 5천원, 홍보
디지털과 1건 2,886만 6천원임

※ **결산서 900p, 심사 보조자료 73, 79p 참고**

나)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예비비
계	33,237,486	3,204,204	9.6	6,287	80,926	508,715	561,951	2,046,319
기획예산과	26,546,920	2,663,781	10		732	487,820	128,909	2,046,319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예비비
홍 디 지 털 과	4,742,705	356,064	7.5		80,194	5,800	270,069	
재 무 과	464,101	21,261	4.5				21,261	
세 무 1 과	532,388	70,544	13.2	6,287			64,256	
세 무 2 과	605,528	66,795	11			4,860	61,935	
부 동 산 과	345,844	25,756	7.4			10,235	15,521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집행잔액은 32억 420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9.6%임.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이 628만 7천원, 낙찰차액이 8천 92만 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71만 5천원, 지출 잔액 5억 6,195만 1천원 임.

※ 결산서 136~144p, 심사 보조자료 67p 참고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정안정화 기금	기획예산과	0	17,101	17,101	0	17,101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재정안정화기금이며, 2020년도에 171억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없음,

※ 결산서 273p 참고

다.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9.6%로(검토보고서 6쪽 참고), 2019회계연도의 63.5%보다 53.9%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배제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여짐.

○ 기획예산과의 경우

-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331,020,570원 발생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센터 등 사업장 휴관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심사 보조자료 69쪽 참고)

-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114,000,000원 발생한 바, 기관공통운영비 중 연구용역비는 정책사업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2020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연구용역 1건 외에 수요가 없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심사 보조자료 70쪽 참고)

이에 따라 2021년 예산편성 시에는 2020년의 저조한 집행률을 감안하여 적게 편성하였음(5,000천원 편성)

○ 홍보디지털과의 경우

-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의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800,000원,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383,050원, 어디서나지원단 운영의 「기타보상금」 보조금 반납금

8,761,270원 등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
투버 영상공모전 취소, 대면기자간담회 축소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남.(심사 보조자료 75, 77쪽 참고)

○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의 경우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출장 자제, 대면조사 미실시 등이 주
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심사 보조자료 81, 83, 85쪽 참고)

○ 기획재정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여러 행정여건
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
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관련법령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